

입 법 예 고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2025. 12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)

1. 개정이유

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·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은 민감한 영업정보로서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직접 생산 활동이 없는 농업법인의 유통·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은 해당 농업법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)

나. 공익직접지불금 및 보조금 신청정보가 등록대상 정보에서 삭제됨(대통령령 제34186호, 2024.2.6.)에 따라 변경 등록대상 정보에서도 삭제함(안 제3조의3제2호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정보는”을 “정보와 제8호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의 정보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의3제2호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)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 제10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다만,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.	제2조(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정보와 제8호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의 정보는 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3(변경 등록대상 정보)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	제3조의3(변경 등록대상 정보) 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2의2.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</u>	<u><삭 제></u>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